

# 서울신학대학교 현대목회연구소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현대목회연구소'(Institute for Contemporary Ministry)라 칭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성서적 가르침에 기초한 올바른 목회를 연구하고, 변화하는 현대 사회와 문화에 적합한 목회적 실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문 교류에 힘쓰으로써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 실천신학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의 목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①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미나와 프로그램,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 시행한다.
- ② 한국교회와 목회적 실천에 관한 유익한 논문과 글을 수집하고 발간한다.
- ③ 오늘의 목회 현장을 이해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리서치 등을 시행한다.
- ④ 오늘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회적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목회자들과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한다.
- ⑤ 개 교회별 목회컨설팅 과정을 개발하여 현장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 ⑥ 한국교회와 목회자,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하도록 한다.

## 제 2 장 조 직

**제4조** (임직원)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후원이사, 운영위원, 연구원, 간사,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 (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은 서울신학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후원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소장의 동의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④ 간사 또는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6조** (후원이사) 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소를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으며, 임기 동안 연구소 사업을 위해 일정액(매월 5만원, 10만원, 20만원, 기타)을 후원하는 자로 한다. 임기는 1년이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 운영위원회 및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연구위원은 소장의 지시를 따라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연구위원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 ③ 간사 또는 조교는 소장의 지시를 따라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도록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 제9조** (임명) 연구소의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연구위원회) ① 현대목회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 ②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도록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 ④ 본 연구위원은 현대목회를 연구하는 외부 연구소와 협력할 수 있다.

## 제 4 장 회 원

- 제12조** (자격)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본 연구소를 위해 재정(정기, 비정기)과 기도로 후원하는 자로 한다.
- 제13조** (권리) 연구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기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다.
- 제14조** (회원종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교회, 선교단체)으로 구분한다.
- 제15조** (회비) 개인회원의 회비는 년 2만원, 단체회원의 회비는 년 5만원으로 한다.
- 제16조** (회원제명) 본 연구소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서면 상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통고가 본 연구소에 도착한 날을 제명일로 한다.

## 제 5 장 재 정

- 제17조** (재원)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
- ② 외부 후원금
- ③ 연구기금
- ④ 회비
- ⑤ 기타

**제18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9조** (승인)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부 칙

- ①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②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